

● 제32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05)

2024. 4. 2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805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 4. 18.

다. 회부일 : 2024. 4. 19.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는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 마음투자지원사업의 민간심리상담기관(바우처) 평가 및 모니터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 인력 확보를 위해 주요 기관 (심리학회, 주요대학 등) 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 심리지원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 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①항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증정신질환 중심의 정신건강사업이 시민의 일상적 마음돌봄을 위한 체계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서울시광역심리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함
- 심리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다. 위탁사무 내용

-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평가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재난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 서울심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기술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기획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민간위탁기간 : 2024. 7. 1.~2026. 12. 31.(2년 6개월 )

마.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9
- 시설규모 : 면적 1,232㎡(373평, 지하1층~지상5층)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사. 소요예산 : 1,151,183천원

- 민간위탁금 : 557,695천원(인건비 265,331천원, 운영비 109,754천원, 사업비 등 182,61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593,488천원(시설공사비 등 593,488천원)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정신건강 및 심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4.4.15. :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설립·운영 계획 수립
- 2024.4.15.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신규위탁)
- 2024.4.1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3차)

○ 향후계획

- 2024.4. : 시의회 동의

- 2024.7. :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

※ 작성자 :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전영희 (☎ 2133-7558)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이하 “동의안”이라 한다)’은 ‘전문성’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수립’과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신규 민간위탁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2024년 4월 18일 ‘긴급<sup>1)</sup>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 민간 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sup>2)</sup>

시 설 명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9		
시설규모	대지면적 405㎡, 건물연면적 1,232㎡ (지하1층~지상5층)		
시설용도	심리지원사업 품질평가 관리, 제공인력 역량강화, 근거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보급 등		
이용대상	일반시민, 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수용인원	100명
민간위탁금	1,771,283천원 (2024년)	근무인원	일반직 9명

### - 구 분 : 신규위탁

- 위탁기간 (예정) : 2년 6개월<sup>3)</sup> ('24. 7 .1. ~ '26. 12. 31.)

2)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 위탁을 수반하는 위탁 유형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7 참조)

3)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 (5년 이내)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3년 이내) 근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7 참조



- 소요 예산 : 1,362,383천원 (민간 위탁금 및 부동산 임차료 )

▶ 민간위탁금: 1,151,183천원

( 센터운영비: 557,695천원, 센터리모델링비: 593,488천원)

▶ 부동산 임차료: 211,200천원

(33,000천원 X 2개월, 36,300천원 X 4개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광역심리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신규)	공모 예정	2년 6개월 (’24.7.1 ~ ’26.12.31)	적정

###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는 기존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수립’과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관’을 설립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목적과 위탁 사무는 다음과 같음.

#### ○ 사업목적

-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마음건강 전달체계 구축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운영
-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역량강화
- 우울·불안 등 경증정신질환에 효과적인 근거기반 마음건강서비스 제공

#### ○ 위탁사무 내용

-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평가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재난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 서울심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기술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기획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지원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 「서울시 광역심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는 ‘서울시 심리 사업’ 관련 ‘전반적인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지원’ 등의 ‘총괄 기획 및 조정’ 기능을 하는 역할임. 즉,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총괄 기획·조정 기관이자,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역할임.
- 그리고 둘째는, ‘우울·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효과적인 근거기반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4) 제공 기능’ 임. 즉, 학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민간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실제 심리지원 사업의 ‘집행’ 기능임.
- 이러한 두 가지 주된 사무를 바탕으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왜냐하면, 동 기관의 사무 자체가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다시 말해, ‘정신건강’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무이며, 이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검사, 평가, 연구,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4) 서울시 광역심리센터의 조직 및 인력은 총 2팀, 9명 (센터장 1명, 팀장2명, 팀원 6명)이며, 실제 상담 서비스는 ‘민간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 나아가, 동 기관의 주된 역할이 ‘심리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 및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 서비스’만을 집행하는 타 기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동 사무의 ‘민간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심리지원센터’ 사무 관련 명시적인 ‘민간 위탁’ 추진 가능 근거 및 지원 근거가 존재함.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종합의견

- 동 ‘서울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수립’과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2024년 4월 18일 ‘긴급<sup>5)</sup>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 동 사무는 첫째, 서울시의 ‘심리지원’ 사업 관련 ‘총괄 기획, 조정, 평가 및 인력 교육’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둘째,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집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심리 관련’ ‘특수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추진 및 지원 관련 ‘명시적인 근거’ 조문이 존재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관의 위탁 사무 중 하나인 현행 ‘서울심리지원센터 4개소’ ‘관리 및 역할 정립’ 등의 경우는 지난 ’23년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회계 관리, 수탁 법인의 비전문적성, 부실한 외부 강사 운영, 표준화 되지 않는 사업’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 사항임.
- 따라서, 향후 동 ‘서울시 광역심리센터’가 실제로 설치 운영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이를 위해 향후 서울특별시 지침상 또는 관련 조례상 ‘서울시 광역심리센터’의 ‘권역별 4개 심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심리 사업 표준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광역 센터’와 ‘권역별 센터’ 사이의 정기적 ‘실무 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은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문 의 처

(02-2180-8145)